

## 운동장관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운동장 사용과 시설물 및 기구의 보관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운영)** ① 운동장 내의 시설물 및 기구의 보관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관리한다.(개정 2015. 5. 1)

②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직원 또는 조교를 둘 수 있다.

**제3조 (사용범위)** ① 운동장은 본 대학의 체육관련 학과의 수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운동장 사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체육관련 학과 전공수업 및 교양 체육수업
2. 구성원(교직원, 학생 등)의 체육활동
3. 체육 관련기관 및 지역주민의 체육경기
4. 기타 관리 부서에서 승인된 행사

**제4조 (사용신청 및 승인)** 수업관련 이외의 목적으로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1개월 전에 신청하며, 사무처장의 승인(별지 제1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중에는 체육관련 학과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 5. 1)

**제5조 (사용승인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사용승인을 제한 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시설물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2. 관리상 대여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3. 체육행사가 아닌 집회 등의 행사 및 기타 유사한 행사
4. 사용 승인을 받아 권리를 양도할 때
5. 사용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학교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6. 학교 교육활동, 교내행사(입학, 졸업, 입시 등) 및 관리상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7. 사용 중 중대한 지적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6조 (사용료 징수 및 관리)** ① 본 대학 시설물관리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며, 징수된 비용은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 비용으로 사용한다.

② 사용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시설 사용에 따라 지원된 관리 인원에 대한 관리수당지급은 시설물 사용료에서 지급한다.

**제7조 (사용시간)**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하절기 : 주간 06:00 - 19:00, 야간 19:00 - 21:00
2. 동절기 : 주간 07:00 - 17:00, 야간 17:00 - 21:00

**제8조 (육상트랙 개방시간)** 육상트랙은 인근주민에게 제한된 시간범위 내에서 무료로 개방할 수 있으며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하절기 : 3월 1일 ~ 10월 31일, 오전 05:30 - 08:45, 오후 18:00 - 21:00
2. 동절기 : 11월 1일 ~ 다음해 2월 28일, 오전 06:00 - 08:45, 오후 18:00 - 20:00

**제9조 (사용수칙)** 운동장을 사용할 경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조잔디구장 내에는 화기류, 병류, 음식물류, 껌의 반입을 금지한다.
2. 축구경기장 또는 트랙에서는 적절한 운동화를 필히 착용하여야 한다.
3. 트랙에서는 조깅이나 육상종목 이외의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롤러브레이드, 킥보드 등 다른 운동을 할 수 없다.
4. 애완견 등의 동물과 동반 출입을 금한다.

5. 사용자는 운동장을 사용함에 있어서 학교시설물이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사용 중에 발생한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하여 가져가야 한다.
7. 사용 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학교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폭설 후 잔설 결빙 시에는 운동장 사용을 금하며, 이미 허가 된 경우에도 허가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자의 변상 책임)** 시설 사용자는 시설 사용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사용 중에 훼손·분실한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 또는 그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사고의 책임)** 사용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 (지침)**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필요에 따라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다.

**부 칙(2008. 11. 17)**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운동장 사용 신청서

담당	주임	팀장	처장

사용일시	년 월 일 요일 년 월 일 요일	시부터 시까지	사 용 시 간 (      시간)
단 체 명			참 석 인 원                      명
			사 용 료                              명
대 표 자	직 위 :	성 명	
사용목적			
장 소	<input type="checkbox"/> 인조잔디구장 <input type="checkbox"/> 운동장 <input type="checkbox"/> 육상트랙 <input type="checkbox"/> 농구장 <input type="checkbox"/> 족구장 <input type="checkbox"/> 배구장		

위와 같이 운동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TEL)

사무처장 귀하

### 운동장 사용 허가서

(접수                      )

사용일시	년 월 일 요일	시부터,	년 월 일 요일	시까지
단 체 명		참석인원		유지관리비
대 표 자	직 위		성 명	
사용목적				
장 소	<input type="checkbox"/> 인조잔디구장 <input type="checkbox"/> 운동장 <input type="checkbox"/> 육상트랙 <input type="checkbox"/> 농구장 <input type="checkbox"/> 족구장 <input type="checkbox"/> 배구장			

위 기재 내용과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하오니. 사용에 있어 아래의 사용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관리통장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수칙**

1. 인조잔디구장 내에는 화기류, 병류, 음식물류, 껌의 반입을 금지합니다.
2. 축구경기장 또는 트랙에서는 부상방지 및 시설보호를 위해 인조잔디용 축구화, 운동화를 필히 착용하여야 합니다.
3. 트랙에서는 조깅이나 육상종목 이외의 다른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예 :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롤러블레이드, 킥보드, 유모차 등 출입금지)
4. 애완견 등의 동물과 동반 출입을 금합니다.
5. 사용자는 운동장을 사용함에 있어서 학교시설물이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훼손 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6. 사용 중에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하여 가져가야 합니다.
7. 사용 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학교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8. 폭설 후 잔설 결빙 시에는 운동장 사용을 금합니다.(이미 허가 된 경우에도 허가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9. 사용 중에 민. 형사상의 사고 발생 시에는 사용자가 책임집니다.

년 월 일

호서대학교 사무처장